

문 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과 장 신상곤 서기관 최병석	042-481-8321 042-481-573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년 9월 4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9월 3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특허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1973년 이후 간접침해 규정 대폭 개정, 3D 프린팅 데이터 전송도 보호 -

□ 특허청은 특허 침해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9월 5일(14:00~16:30)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특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간접침해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의 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 특허,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특허발명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여 특허 발명제품 전체에 대한 직접침해로 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도 간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 그간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은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간접침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반면,

* ① 미국·유럽은 초기에는 특허침해에 사용되는 부품의 전용성(특허발명 이외의 용도 유무)이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점차 특허발명 이외의 용도를 갖는 부품에도 간접침해 적용

② 일본은 특허발명에만 사용되는 물건에만 적용하다가('59년), 특허발명 이외의 용도를 갖는 물건·프로그램에도 적용하고('02년), 침해품 소지행위도 적용('06년)

- 우리나라는 73년도에 마련한 간접침해 규정의 기본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주요국에 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예를 들어, 현재의 간접침해 규정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즉, 전용물(專用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침해소송에서 그 물건이 특허발명을 만드는 용도로만 쓰인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아울러, 간접침해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허제품에 대한 '3D 프린팅 데이터'를 무단 전송하더라도 특허로 보호받는데 한계가 있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

3D 프린팅을 이용한 특허제품의 생산(3D 프린팅 데이터 제공)



- ◆ 3D 프린터를 이용한 乙(개인)의 특허제품 생산은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니어서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 乙의 실시를 유발한 甲의 3D 프린팅 데이터 제공 행위도 물건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이번 간접침해 개정안은, 전용물(專用物)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핵심 부품으로 한정'하고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 또한,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여,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특허 보호가 가능하게 했다.
- 특히, 직접적으로 부품 등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특허발명인 것을 알면서’ 그 실시를 유도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허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 **공청회**에서는 법조계, 기업체 특허담당자, 교수, 변리사 등 다양한 특허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누구나 사전등록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특허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73년도에 마련된 간접침해규정에 대한 대폭 개정인 만큼 산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간담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감안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1. 공청회 개최 안내문

1-2. 주요국과의 침해 규정 비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와 최병석 서기관(☎042-481-57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특허침해규정 개정 공청회

□ 공청회 개요

- (일시) '18년 9월 5일(수), 14:00 ~ 16:30
-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서울 강남구 역삼동)

□ 세부 일정

구 성	시 간	내 용
진행	14:00 ~ 14:05	개회
	14:05 ~ 14:10	인사말씀
	14:10 ~ 14:40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설명
	14:40 ~ 15:30	공술인 주제 발표 고아라(대전지검 검사) 강명수(부산대 교수) 곽동한(현대모비스 차장) 이진수(휴롬 상무)
	15:30 ~ 16:25	질의응답
	16:25 ~ 16:30	폐회
		특허심사제도과장

□ 개정안 요지

- (중성물(中性物) 기여침해 신설) 전용성(專用性) 요건을 탈피하여 특허보호의 실효성 제고
- (정보통신망 이용 기여침해 신설) 3D 프린팅 데이터 등의 무단 전송 대응
- (유도침해 신설) 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 새로운 유형의 침해에 대응

[붙임 1-2]

주요국과의 침해규정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유럽(獨, 英)	미국
[직접침해]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X	X	O	O
[간접침해]				
전용물 대상 기여침해 인정 여부	O	O	O	O
非전용물 대상 기여침해 인정 여부	X	O	O	O
非물건 대상 간접침해 인정 여부	X	△*	O	O
유도침해 인정 여부	X	X	O	O

* '프로그램'에 의한 간접침해 인정(데이터에 의한 간접침해는 불인정)